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48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구자근 · 강승규 · 김선교
최수진 · 김승수 · 박성민
강선영 · 정동만 · 이상휘
박형수 · 유상범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위생 관리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졸음쉼터

제47조의2제1항 중 “주차장”을 “주차장, 졸음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관리에 필요한”을 “기준,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마. (생 략)</p> <p><신 설></p> <p style="padding-left: 2em;">바. (생 략)</p> <p>3. ~ 9. (생 략)</p> <p>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u>주차장</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마.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바. <u>졸음쉼터</u></p> <p style="padding-left: 2em;">사. (현행 바목과 같음)</p> <p>3. ~ 9. (현행과 같음)</p> <p>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 ----- <u>주차장</u>, <u>졸음쉼터</u> ----- ----- ----- ----- -----.</p> <p>② -----</p>

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기준,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관한 ---.